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김용연·이병도·김화숙·

봉양순·이정인·최기찬·

이영실·김혜련·오현정·

김동식·서윤기·김소양 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성별영향평가는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요소 및 발생원인 등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 평가도구임.
- 이에 성별영향평가의 보다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법률에 위임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-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하여 타당성 확보 및 정책적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책무를 추가함.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)

나.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명시함.(안 제18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성별영향평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”을 “여성가족정책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시장의 책무) (생 략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>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<u>성별영향평가 사무를 총괄하는 소속기관의 장</u>을 성별영향평가 책임관으로 지정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① ----- -- <u>여성가족정책실장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(시장의 책무)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·권고적인 내용이므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 - 제18조(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) 제1항의 개정은 기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